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4
----------	-----

2009년 6월 3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3월 5일 진두생의원 외 14인
- 나. 회부일자 : 2009년 3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9년 7월 1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진 두 생 의원)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의회 사무처직원의 총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6조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의회 공무원 정원 변동사항 발생시 조례를 이중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더불어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의회규칙으로 일원화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가.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 나. 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 병 국)

□ 검토요지

- 본 안건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급과 정수를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별표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의회 사무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이 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운영의 불합리성을 초래하는 바 이를 의회규칙으로 바로잡고자 제안되었음.
- 먼저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한 안제6조는,

지방자치법 제90조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제92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의 임용·복무 등 신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그런데 기존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는 별표1에서 동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처직원의 신분변동에 관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고, 사무처 직원의 정원이나 직급 변경시 이를 신속하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별표1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삭제하고 서울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과 정수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안제6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비추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제8조는,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의회내부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무직원의 구성 및 구체적인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 부분은 의회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료됨.

더불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의회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9명)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04관련
----------	-------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30일
제안자 : 윤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의회 사무처직원의 총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제6조에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중복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의회 공무원 정원 변동사항 발생시 조례를 이중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를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u>별표1과 같다.</u></p>	<p>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8조(시행규칙)...따로 <u>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시행규칙)...따로 <u>의회규칙으로 정한다.</u></p>	<p>제8조(시행규칙)...따로 <u>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를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u>별표1과 같다.</u></p>	<p>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u>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